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3608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이수훈

피고(탈퇴)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원, 박건우, 조인형

피고 승계인수인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원, 박건우, 조인형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14,560,190,846원 및 그중 13,292,217,265원에 대하여는 2020. 4. 7.부터, 1,267,973,581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각 2020. 6. 22.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사체,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업체이고, 피고는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및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 업무 등을 영위하고 방위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9.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8. 9. 14.부터 2022. 10. 21.까지, 계약금액을 21,628,732,756원으로 하되, 그중 선급금 8,27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2018. 9. 1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9. 4. 10. 위 계약상의 중도금 4,997,400,000원(부가세 별도)을 2019. 4. 2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계약과 이 사건 수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9. 13. 피고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보증기간을 2018. 9. 18.부터 2022. 11. 20.까지로, 보증금액을 10,496,969,000원으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2019. 4. 22. 피고와 보증기간을 2019. 4. 26.부터 2022. 11. 20.까지로, 보증금액을 6,224,344,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위 지급보증계약과 동일한 지급보증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선급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및 중도금

반환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이후 2018. 9.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계약에 따른 선급금 8,274,000,000원(부가세 제외)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2019. 4.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 4,997,400,000원(부가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유동성 부족과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2019. 10. 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11. 14.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56호). 소외 회사는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해지에 대한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위 통보를 받은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급금(중도금 포함, 이하 중도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중 기성대가를 정산한 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2. 28. 기성대가 정산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의 액수를 12,679,735,812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2020. 2. 13.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4,549,393,032원(= 위 잔여 선급금 12,679,735,812원 + 부가세 1,267,973,581원 + 약정이자 601,683,63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26. 및 2020. 3. 24. 원고에게 보증사고 손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3. 10. 및 2020. 4. 6.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 4. 6.자로 재산정된 약정이자 669,508,804원을 반영하여 총 보증금 청구금액이 14,617,218,198원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자 계산 과정에서 1원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부가세를 환급받았었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20. 4. 22.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국세청에 반납하였다.

자. 원고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은 피고는 2020. 5. 13.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으며 관계 회사의 경영부실을 숨기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을 취소하였으니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20. 5. 14. 재차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차. 한편, 2020. 2. 4. 제정되어 2021. 2. 5.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은, 위 법률 시행 당시 피고가 행하는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위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인 피고 승계인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21. 11. 15.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이 피고에서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인수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1. 23. “피고 승계인수인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피고 승계인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14,560,190,846원(= 잔여 선급금 12,679,735,812원 + 부가세 1,267,973,581원 + 이 사건 원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 중 잔여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437,202,783원¹⁾ +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지급된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자 175,278,670원²⁾) 및 그중 잔여 선급금 및 약정이자 합계 13,292,217,265원(= 12,679,735,812원 + 437,202,783원 + 175,278,670원)에 대하여는 2020. 4. 7.부터³⁾, 부가세 1,267,973,581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⁴⁾,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승계인수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승계인수인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및 소외 회사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통지에 의해 취소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인적 구성이나 사업구조적인 밀접성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승계인수인은 위 취소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선급금 유용을 방지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7조, 제8조에 따라, 피고 승계인수인의 보증책임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2018. 9. 17. 이 사건 원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에게 '수령한 선급금을 계약대상사업인 E의 생산준비에 사용하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시 선급금 전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수령한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재를 공급예정인 협력회사에 추석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이행 약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8. 9. 19. 원고에게 해당 선급금을 재료비, 선급금, 직·간접 노무비, 간접경비 및 투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선급금 지출계획을 재차 제출하였는데, 해당 지출계획에 첨부된

‘지출 예정 업체 목록’에는 피고가 하수급 업체들에게 재료비로 약 25억 원 가량을, 선급금으로 약 30억 원 가량을 지출할 것이라는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9.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계약에 따른 선급금 약 82억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이후, 2018. 9. 21.경까지 해당 계좌에서 합계 약 44억 원을 하수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였고, 약 36억 원을 소외 회사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이후 그 계좌에서 합계 약 10억 원을 하수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4.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 약 49억 원을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이후, 일부 금액을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하다가 I은행으로부터 약 2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2019. 5. 31. 잔액 합계 약 58억 원 전부를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하수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14. 8.경 인적분할을 거쳐 분할 후 존속회사가 소외 회사가 되었고, 분할 후 신설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하였는데(이하 분할 후 신설회사를 ‘F’이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이 양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 소외 회사는 F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었고, F의 채무를 일부 지급보증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원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8. 10. 19. 기업은행 계좌에서 F에 대여금 명목으로 12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9. 3. 28. 주식회사 K에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9. 6. 28.경부터 2019. 7. 17.경까지 H은행 계좌에서 F에 합계 약 23억 원을 ‘F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2019. 6. 26. F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약 45억 원을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

마) L회계법인은 2019. 3. 25. F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2019. 4. 11. 해당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약 46억 원 상당의 대여금이 대손충당금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소외 회사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 상으로 약 53억 원이 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J은 2019. 3. 28.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주식회사 K 및 유한회사

M에 각 50%씩 각 3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전신인 분할 전의 주식회사 F은 2004. 7.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소외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분할 후 신설된 F 역시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을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시키고 있었다.

사) 소외 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2016년 말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을 알리며 납품기일 조정이나 정산 차액금에 대한 분할 상환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2017년경에는 원고에게 긴급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받은 적도 있다. 원고는 2018. 8.경 소외 회사에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회사 매각에 대해 계약 체결 진행 사항이나 매각 완료 예상 일자, 향후 계획 등을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11.경에는 소외 회사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재무안정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인적 구성 또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관여 정황 등만을 들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승계인수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2017년경부터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2018. 9.경 이 사건 원계약 및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될 무렵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승계인수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자금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외 회사가 F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장기 대여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공시된 소외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게다가 F에 대한 의견거절 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은 2019. 4. 11.경인데 이는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지 한참이 지난 뒤이고,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2019. 4. 22.보다도 열흘 가량 앞서는 때이며, 소외 회사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반영된 감사보고서 역시 2019. 3. 29. 작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이다.

②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피고로서도 주채무자의 재정 상황이나 채무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비교적 쉽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소외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2018. 9.경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차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채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하여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 체결 이후 4일이 지난 2019. 4. 26. 소외 회사에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 및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보증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제출한 선급금 지출계획에 따라 하수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약 55억 원 중 약 54억 원을 지급하여 그 대부분을 계획대로 지출하였고, 주식회사 K에게 대여한 30억 원은 그 대부분이 위 대여 이전에 J이 소외 회사에 입금한 27억 원 상당(이는 J이 자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을 통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F에 지급한 금액 상당 부분은 I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그 출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소외 회사의 선급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 승계인수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유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일부 금액이 예정과는 달리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선급금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인 점,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선급금이 소외 회사의 다른 자금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 지출된 것은 아닌 점, 재정난에 직면한 회사가 사업 계속 및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지출이 시급한 분야에 일부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업자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처음부터 선급금을 정해진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소외 회사가 선급금 유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과 중도금의 규모나 비중 등이 여타 계약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선수금 중 상당 부분을 지출 계획에 따라 하수급 업체들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선수금의 지급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한 자금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의 직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방산업계의 관행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고, 소외 회사 및 F의 매출 대부분이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점 역시 원고의 규모나 방산업계에서의 지위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차례 재정 상황이나 사업 안정화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정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가 소외 회사와 장기간의 거래를 이어오면서 대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거래 당사자의 채무 이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긴급하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재무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유독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 승계인수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재정을 비롯한 경영 전반의 사항들을 속속들이 보고받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더욱 어렵다.

⑥ 만일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에 대해 피고 승계인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수령과 유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정에 원고가 모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승계인수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피고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다. 보증책임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피고 승계인수인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 등 신용정보의 변화를 알고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피고의 선급금 지출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 변화는 피고도 쉽게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인의 지위에 서려는 피고로서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승계인수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급금 이행 약속서 및 선급금 지출계획을 제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선급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승계인수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조수진 병가, 재판장, 판 사, 판사 오민관

1) 지급된 선급금 8,274,000,000원에서 기성대가를 정산한 나머지 7,682,335,812원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시작일인 2018. 9. 18.부터 원고가 자료제출요청에 회신한 2020. 4. 6.까지 약정이율 연 3.6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지급된 중도금 4,997,4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시작일인

2019. 4. 26.부터 위 2020. 4. 6.까지 약정이율 연 3.7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3) 원고의 최초 보증금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자료제출 회신까지 마친 2020. 4. 6.의 다음날

4) 원고가 국세청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한 날 이후로서 재차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20.

5. 14.의 다음날